

(앞쪽)

보내는 사람

“캐릭터 또는 로고”

받는 사람

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 및 뒤쪽의 교육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, 교육장소 약도, 교통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통지번호: _____

교육과정명		입교구분
교육 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복무기관명 * ()에는 기관소재지 시·군·구 표기 ()	
교육통지	등록일시	교육기간
	교육장소	
	차량탑승 장소 및 시간(차량호수) * 뒤쪽 약도 참조	

「병역법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지방병무청(병무지청) 과 전화번호 :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

직인

유의사항

- 개별입교 대상은 교육장소로 등록일시까지 도착하여야 하고,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 장소로 집결하여야 합니다.
- 교육생 준수사항
 -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 - 교육여비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 등록 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- 결석(결강)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.
-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·결석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33조에 따라 연장복무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

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 시작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(다만, 「병역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은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 먼저 연기 신청을 한 후 나중에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).

- 1.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
- 2. 본인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(家事)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
- 4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

교육장소 약도

*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장소 약도를 말함

교통편 안내

1. 지하철 / 시외버스

2. 시내교통편